의안번호	제51호
의 결 연 월 일	2022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양섭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9월 5일

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양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

발의연월일 : 2022년 9월 5일
발 의 자 : 이양섭・박경숙・김꽃임・김국기・
이의영・이종갑・임병운 의원(7인)

1. 제안 이유

○ 우리도의 농수산식품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운용중인 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○ 「농어업・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이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(안 제2조)

3. **조례안** : 붙 임

4. **관계법령 발췌** : 붙 임

5. **예산조치** : 필요 없음

6. **관련부서 협의** :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와 협의

7. **입법예고** : 본 조례안은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”을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
1. “농수산식품”이란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제13호에서 정의한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.	1. ----------「**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**」----------.

관 계 법 령

□ 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. “농수산물”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농산물: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나. 수산물: 「수산업 · 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7. “식품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

나.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

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수산물”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.

가. 농산물: 「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

나. 수산물: 「수산업 · 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(「소금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)

13. “농수산가공품”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농산가공품: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

나. 수산가공품: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